

어촌계 가두리 양식어장의 행사실태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고찰

옥 영 수*

The Research on the Fish Aquiculture Structure of Fishing Community

Ock, Young - Soo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어촌계 가두리 양식어장 이용을
둘러싼 제약요인 분석 |
| II. 어촌계 가두리 양식어장의 본질적
의의 | V. 정책 시사점 및 결론 |
| III. 어촌계 가두리 양식어장의 행사실
태 및 유형별 사례분석 | 참고문헌
Abstract |

I. 서 론

1990년대 후반 이후 어촌계에 의해 행사되는 가두리 양식어업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난 개인면허의 증가와 더불어 전반적인 면허지급증을 야기하여 국내양식어류의 과잉생산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중국 등으로부터의 저가 홀어 수입 증가와 맞물려 국내가격을 크게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 결과 국내 어류양식업자들은 심각한 경영수지 악화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소규모로 가두리 생산을 영위하고 있는 어촌계 가두리 양식어업자들에 있어서 더욱 혹독하게 작용하였다. 즉 자본축적이 영세한 어촌계 양식어업자의 경우 대부분 운영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보증능력이 부족한 어촌계원들은 계원들 간 상호 연대보증을 성행하게 하였다. 이 결과 경영악화 상태가 지속되어 계원 한명이 도산

속 영 수

을 하게 되면 연쇄도산을 불러일으키는 등 연안어촌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한편 향후 수산물 무역자유화가 더욱 진전되고, 한·일 및 한·중 간 FTA 등이 추진될 경우 국제간의 생산원가 차이에 의한 수산물 수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영세소규모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촌계 가두리양식업의 경영상태는 더욱 악화될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어촌사회문제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어촌계 가두리 양식어업의 발전방안은 없는 것인가가 의문의 대상이 된다. 신WTO체제에 의한 정부 보조금의 축소, 면세유의 공급 제한 등 향후 부정적 요인은 점점 더 현실로 다가 오고 있는 상태에서 언제까지 이런 경영악화 상태에서 벗어 날 수 없는 것인가? 어촌사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각광을 받았던 어류양식업이 다시 건강한 어촌사회 건설의 견인차가 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촌계의 성립에 대한 본질적인 시각하에서 어촌계 및 수협면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어류양식업의 어장 행사실태가 파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어촌현실에 대한 보다 구조적인 인식을 이를 수 있으며 이런 통찰과정 하에서 미래 어촌계 및 어촌계 가두리 양식어장에 대한 구조개편의 정책방향을 결정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어촌계 및 수협면허에 의해 영위되고 있는 어류양식업의 어장이용실태를 파악하는데 주 목적을 두었다. 한정된 시간과 능력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사례를 수집할 수는 없었지만 가두리양식어업이 매우 성한 경남 통영과 전남 여수, 완도 지역, 그리고 그 중간지역이라 할 수 있는 남해군의 사례를 수집해 분석함으로써 어촌계 가두리양식의 대표적 양식지역을 대체로 포함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사례를 통해서 향후 어촌계 및 어촌계 가두리양식어업의 대체적인 정책방향을 가늠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여겨진다. 혹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문제의 방향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논의의 시발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I. 어촌계 가두리 양식어장의 본질적 의의

1. 어촌계의 성격과 어촌계 면허어장의 의의

1) 어촌계의 성격

어촌계는 1962년 수협법의 발효에 따른 제도적 산물이지만 그 기본은 어업공동체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고유한 어업공동체가 존립하여 왔던 바, 어업공동체는 공동조직을 근저에 갖는 사회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업공동체의 성립 및 존립의 본질적 속성으로서는 첫째, 한편에 생산수단

의 全體에 의한 總有가 존재하고, 다른 한편에 전체의 구성요소인 個의 私有가 존재해야 하며, 둘째 個에 의한 소유가 거의 평등성을 가져 서로 심한 불균형을 갖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이는 계층의 미분화가 지배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62년 수협법이 발효할 때까지 우리나라 연안어촌에는 많은 어업공동체가 존재하였고, 그러한 어업공동체는 부분적으로 변질, 해체과정을 갖는 것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본질적 속성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협법에 의해 제도적인 조직으로서 쉽게 틀을 잡아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당초에는 어촌계는 연안어촌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설립권은 지구별수협에 있었다. 이는 당초의 수협법의 규정 때문인데, 1966년 수협법이 개정됨으로써 비로소 자주적 조직으로서 독립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즉 1966년의 수협법 개정에 의해 ‘조합원은 1개 또는 수개의 부락 또는 리, 동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다’라고 하여 어촌계는 그의 구성원 자격을 비록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에 한정시키고 있었지만 조직의 성격은 자율적, 자주적 조직으로서 독립성을 갖게 되었다¹⁾.

이러한 제도적인 관점에서 조직되고 설립된 어촌계 성격은 연안어장에 대한 합리적 관리 주체로서 이해될 수 있다. 즉 1962년 수협 설립 이전의 연안어장에 대해서는 무규제, 무관리의 방임적 상태에 있었으며, 다만 자생적인 어업공동체에 의해 유지, 관리될 때들이었다. 따라서 수협과 어촌계가 제도적으로 조직됨으로써 방임적 상태의 연안어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는데, 공동어업권을 창설하여 어촌계에 면허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관점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수협에 의한 어장관리기능이 보다 강화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의 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당시 새마을운동의 확산에 따라 연안어촌에서의 소득증대사업 등에 대한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연안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 결과 수협이 공동어업 이외에 정치어업과 양식업에 대해 면허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무엇보다 비법인어촌계에 대해서 총유형태의 면허가 가능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어촌계에 총유형태의 면허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법적 관점에서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단독으로 면허를 부여하기가 힘들더라도 구성원 전체의 공동이용, 공동관리 형태일 경우는 면허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연안어장의 이용을 둘러싼 연안어촌민의 전체에 대한 사회보장적 기능과 제도적으로 형성된 어촌계에 대한 경제적인 여건조성 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어촌계는 연안어장의 이용과 관리에 대한 주체적 활동을 보장받았다고 할 수 있다. 즉 어촌계 설립의 자주권을 획

1) 주우일 · 육영수, 「공동어장의 합리적 이용방안」, 1984, p.18.

2) 최정윤, “수산업 협동조합의 어업권 관리기능에 대한 비교연구”, 「수산경영론집」, 제29권 제2호, 한국수산경영학회, p.15.

옥영수

득하였고 또 면허어장에 대해서는 총유형태로 면허의 주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 어촌계 면허 어장의 의의

어촌계가 어장 이용의 주체가 되는 것은 어촌계에 대한 국가의 사회보장적 기능과 어촌계에 대한 경제적인 여건조성 기능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중 국가의 사회보장적 기능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연안어촌의 어업구조는 종래 대규모 자본제어업과 영세어가어업의 2종구조로 구조적인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즉 대규모 정치어업이나 동력어선어업과 같은 비교적 자본규모가 큰 어업이 존재하는가 하면 연안, 도서지역에는 농지는 물론이거니와 어업에 관하여도 아무런 물적 기반이 없는 영세어업인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와 같은 영세 어업인들은 계절에 따른 소규모 어업에 종사하거나 도수, 나잡어업 등으로 겨우 생활해 나가는 정도였다. 따라서 이러한 영세어가들에게 연안어장을 독점적으로 이용케 하여 그들에게 물적 생활터전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생활의 균형적 발전을 이룩하도록 하자는 입법정책의 표현이 바로 어촌계에 대한 어업권 취득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어촌계에 대한 경제적인 여건조성 기능은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여러 가지 契가 존재하였으며, 특히 연안어촌에 있어서는 어업공동체가 존재하여 왔다. 이러한 어업공동체가 1962년 수협 발족 이후 어촌계로 변환되었는데, 어촌계는 때에 따라서는 수협의 하부조직, 혹은 기반조직으로서 수협운동의 최말단 조직의 역할을 하고 있다. 수협운동에 있어서 이러한 지역말단조직을 두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수산업의 자본주의적 발달과정에 있어서 영세소규모어업의 발달과 어촌의 번영을 전통적인 어민의 협동정신, 곧 계의 본질적 기능과 자활적 기능에서 구하려는데 있기 때문이다. 어촌계에 대한 어업권 면허는 이와 같이 조직으로서의 어촌계가 경제적으로 존립 가능하기 위한 기초적 조건으로서 이해되어져야 할 것이다.

2. 어촌계 행사어장에 대한 관리방식 논의

이상과 같은 어촌계의 성격과 기능은 결국은 연안어장의 이용 및 관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그것은 한국, 일본 등에 고유한 어업권어업과 결부되어 생각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어업권 어업은 물권적 특성, 타어업과의 경쟁 배제, 어촌사회의 유지 등을 목적으로 태동하고 있는데³⁾, 특히 그 중에서도 어촌사회의 물적기반을 여하히 이루

3) 최정윤(1998)은 우리나라 어업권제도의 특징으로서 1) 배타적으로 어업을 영위할 수 있는 물권적 특성, 2) 능률적 어업과 비능률적 어업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어장분할이용의 취지, 3) 연안어장 이용에 있어서 유용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어업의 험입 배제, 4) 연안어촌사회의 유지, 5) '어장 이용의 민주화와 어장의 종합적 이용'이라고 하는 수산업법의 기본정신 추구의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최정윤, 앞의 책, pp. 67.

어촌계 가두리 양식어장의 행사실태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고찰

어줄 것인가 하는 정책적 관점이 끊임없이 고려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953년 수산업법이 제정된 이래 수많은 법개정의 과정은 어업권에 대하여 산업적 발전여부와 연안어촌에 대한 물적 기반 조성이라는 양측면의 출타기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1962년 어촌계 발족 당시부터 한동안은 연안어촌에 대한 물적 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해 어촌계에 연안어장의 이용권을 집중해 주는 성격이 강하였던 반면, 1970년 급속한 산업발전 시기에는 재산권적 성격의 강화로 생산을 촉진하는 산업적 발전에 무게중심이 실리는 경향이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 1990년대 이후는 변모되어 가는 연안어촌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동어장을 축소한 반면 다양한 양식업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큰 줄기의 명확한 정책방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한편 어촌계가 면허주체로 됨과 동시에 연안어장의 관리도 어촌계에 귀속되었다. 어촌계가 면허의 주체가 되지 않고 수협이 면허의 주체가 되었을 때는 당연히 수협이 어업권 관리의 책임조직이었으나 1975년 비법인 어촌계에 대해서도 종유 형태로 면허가 되면서부터 연안어장의 관리 책임은 수협으로부터 어촌계로 이관되었다.

어촌계로 이관된 어업권관리는 자율적 어업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어촌계원들의 합의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업행사자의 자격, 행사자의 수, 어구 어법의 제한, 조업장소와 조업시기의 결정, 어획체장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어장관리규약은 합의로 정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연 혹은 지역집단의 강한 결속력으로 인해 이러한 규약은 엄격하게 지켜지지 못하고 느슨하게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결과 연안어장관리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그런 문제의 해결책으로 종래와 같이 지구별수협으로 어장관리권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III. 어촌계 가두리 양식어장의 행사실태 및 유형별 사례분석

1. 어촌계 가두리 양식어장의 행사 실태

1) 어촌계 면허 어류양식 어업권 추이

1975년 어촌계에 어업권이 면허 가능하게 된 이후 많은 어업권이 어촌계에 직접 면허되었다. 당시 어촌계에 면허된 어업권은 제1·2·3종 공동어업이 대부분이었으나 오늘날은 당시의 제1종 공동어업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는 마을어업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개인면허가 주를 이루던 다양한 양식업까지 면허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어류양식업이 연안어촌에서 양식업의 주류로 부상하자 어촌계에 있어서도 어류 양식업이 크게 성행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가두리를 포함한 어류등양식업권은 2002년 현재

옥 영 수

〈표 1〉 어촌계 면허 어류등 양식업권 추이

단위 : 건, ha, ha/건, %

연도	건수	면적	전당면적
1997	535	1,566	2.93
1998	701	2,072	2.96
1999	520	2,017	3.88
2000	671	2,276	3.39
2001	739	2,291	3.10
2002	705	2,585	3.67
'02/97	131.8	165.1	125.3

자료 : 수협중앙회, 어촌계명부, 각년도에서 작성.

〈표 2〉 시도별 어촌계 면허 어류등 어업권 현황, 2002

단위 : 건, ha, %

지 역	건 수		면 적		전당면적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경 인	30	4.3	205	7.9	6.83
강 원	10	1.4	31	1.2	3.10
충 남	29	4.1	104	4.0	3.59
전 북	81	11.5	399	15.4	4.93
전 남	268	38.0	1,158	44.8	4.32
경 북	128	18.2	309	12.0	2.41
경 남	135	19.1	355	13.7	2.63
부 산	-	-	-	-	-
제 주	24	3.4	24	0.9	1.00
합 계	705	100.0	2,585	100.0	3.67

자료 : 수협중앙회, 어촌계명부, 2002.

705건에 2,585ha이 면허되었다 〈표 1〉. 이는 어류등양식어업권 전체 면허면적 6,410ha의 40%를 넘는 수준이다.

2) 어촌계 면허 어류등 양식업 시도별 분포

2002년 말 현재 어촌계에 면허된 어류등양식업권의 시도별 현황은 〈표 2〉와 같다. 이에 의하면 면허건수 및 면적이 가장 많은 것은 전남으로서 268건에 1,158ha를 면허받았고, 그 다음이 건수 면에서는 경남, 경북의 순을 보이고 있는 반면 면적 면에서는 전북, 경남의 순을 보이고 있다. 이들 4개 지역의 경우 건수 면에서는 88%를, 면적 면에서는 86%를 점유하여 대부분의 어류등양식업권을 면허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면적을 보면 경인지역이 6.83ha/건으로서 가장 넓은 반면 제주지역이 1.00ha/건으로 가장 협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수와 면적 규모가 비교적 큰 경남과 경북의 경우 건당면적은 2.63ha/건과 2.41ha/건으로서 비교적 협소하게 나타났다.

2. 유형별 사례분석

1) 의의유지형

(1) 여수 H 어촌계

전남 여수의 H 어촌계는 전체 가구수 164호 중 153가구가 어업에 종사하는 등 어업의존도가 매우 높다. 어촌계 종사 유형별로는 양식업형이며, 여수시를 주소지로 하고 있으나 도서지역인 관계로 어촌계 입지분류로는 연안촌락형에 속하고 있다. 또 2002년도 호당 평균소득은 16,042천원으로서 발전수준별로는 자립형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⁴⁾. 또한 어촌계원은 144명으로서 이중 전업은 23명인데 비해 겸업은 121명으로서 겸업비율이 높은 전형적인 반농반어 형태의 어촌계라고 할 수 있다. 어촌계에 면허된 어업권현황은 패류양식 1건 1ha, 어류등 양식 7건 36ha, 마을어업 2건 56ha가 있어 어업자원이 풍부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의 어류양식업은 경남지역에 비해서는 다소 늦게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 즉 1980년대 후반 일부 어업자들에 의해 어류양식이 처음 시작된 이래, 어촌계에서 어류양식업이 면허된 것은 1990년대 들어와서였다. 현재 H 어촌계에서 주로 양식되고 있는 어류양식물의 종류로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조피볼락, 농어이다. 동 어촌계에는 개인양식면허도 1건이 있으며 여기에서는 2명이 양식에 임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수협 또는 어촌계 면허 어류 양식장에서 어류양식을 행사하고 있다.

H 어촌계의 어류양식행사규모는 어촌계의 전반적인 어업형태가 어류양식이기 때문인지 매우 동질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3건의 어류등양식면허(이중 1건만이 어촌계 면허이고, 2건은 수협면허로 되어 있음)에 대해 총 46명의 어촌계원이 행사 계약을 하고 있다. 이는 전체 어촌계원의 1/3이 어류양식업에 종사하는 것이 된다.

현재 수협 혹은 어촌계 면허 어류양식지에 대한 어촌계원들의 행사내용은 일률적으로 조당(6m × 6m) 30만원의 행사료를 내고 있으며, 행사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행사계약시 지원자가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한다. 행사자별 시설규모를 보면 6명의 행사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400~500m²의 시설규모를 보이고 있다. 즉 가장 많은 시설규모를 보이는 행사자라해도 516m²밖에 되지 않으며, 6명의 행사자만이 400m²미만의

4) 어촌계 분류 평정에 의하면 발전수준에 따라 복지형, 자립형, 성장형의 세 단계로 나누고 있다. 이중 복지형은 가장 발전이 높은 어촌계이고, 성장형은 발전수준이 낮은 어촌계이며, 자립형은 그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다. 각 단계별 평정은 어촌계원의 평균소득, 어촌계의 재정상태, 어촌계의 운영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옥영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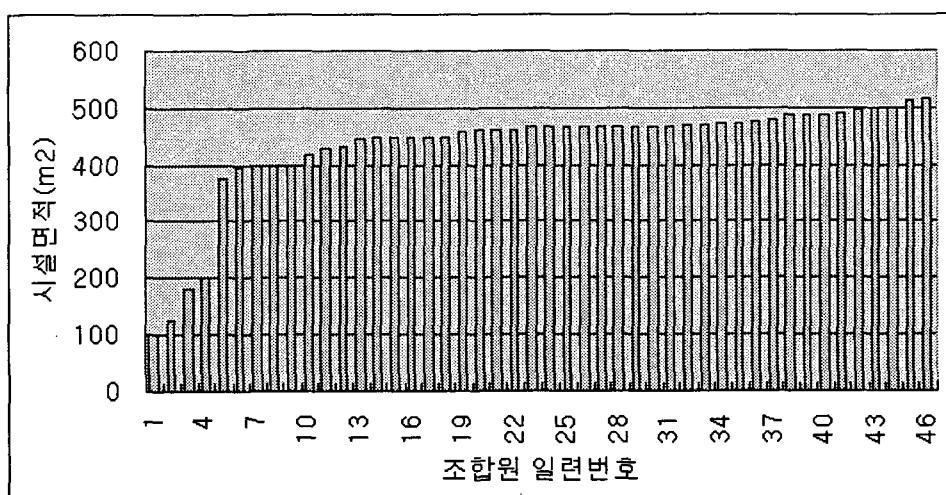
행사면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어류양식업을 생업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촌계원들로서는 어촌계 면허어장에 대해 협동적 자세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그림 1〉

(2) 완도 S 어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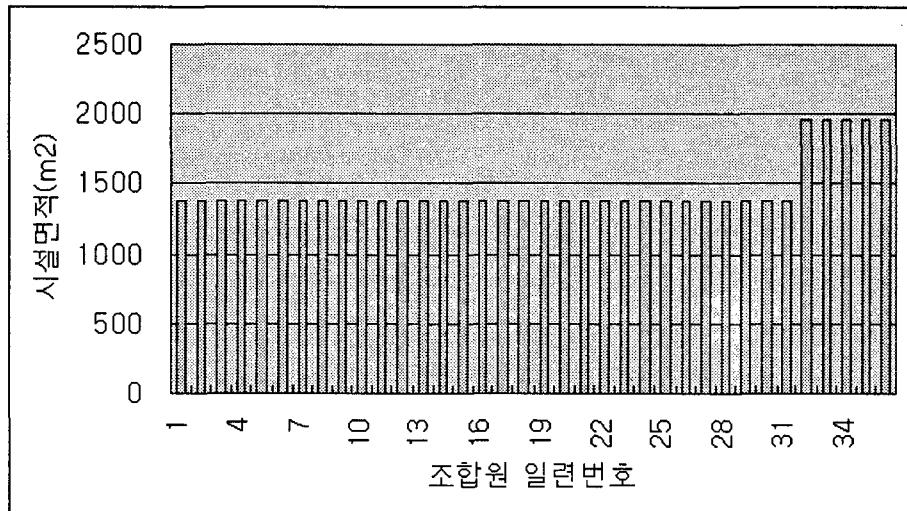
전남 완도의 사례지역인 S 어촌계는 전체 가구수 224호 중 150가구가 어업에 종사하는 등 어업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어촌계 종사 유형별로는 양식업형이며, 도서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완도 본도에서 10분이면 건너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섬이 크기 때문에 연안촌락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2002년도 호당 평균소득은 23,000천 원으로서 발전수준별로는 자립형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 또한 어촌계원은 166명으로서 이중 전업은 25명인데 비해 겸업은 141명으로서 겸업비율이 높은 전형적인 반농반어 형태의 어촌계라고 할 수 있다. 어촌계에 면허된 어업권현황은 정치망 4건 8ha, 해조류양식 2건 28ha, 어류등양식 4건 26ha, 마을어업 1건 63ha가 있어 어업자원이 매우 풍부한 곳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은 일찍부터 김 등 해조류 양식업이 매우 성하였다. 그러던 중 1980년대 후반 일부 어업자들에 의해 어류양식이 시작된 이래 가두리양식이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각광을 받게 되자 1990년대부터 어촌계가 면허주체가 되어 현재 4건 26ha가 면허되었다. 동 어촌계에서 주로 양식되고 있는 어류양식물의 종류로는 가두리 양식장의 일반적 대상어종인 조피불락, 농어가 주류라고 할 수 있다.

S 어촌계의 어류양식행사규모는 매우 동질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2건의 어류등양식면허에 대해 총 36명의 어촌계원이 행사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중 5명의 경우만 시설면적이 1,960m²이고, 나머지 31명은 모두 1,372m²이다〈그림 2〉.



〈그림 1〉 전남 여수 H 어촌계 어류양식 행사자당 행사면적 분포



〈그림 2〉 전남 완도 S 어촌계 어류양식 행사자당 행사면적 분포

현재 어촌계 면허 어류양식지에 대한 어촌계원들의 행사규모는 31명이 조당(7m × 7m 4칸) 7조를 시설하고 있으며, 5명은 10조를 시설하고 있다. 행사계약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행사료는 연도에 따라 다르다. 즉 어촌계의 소요경비에 따라 해마다 다른 금액을 각출하는데 2004년의 경우 일률적으로 10만원씩 각출하였다 한다. 이는 최근 가두리양식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낮은 액수로 책정한 것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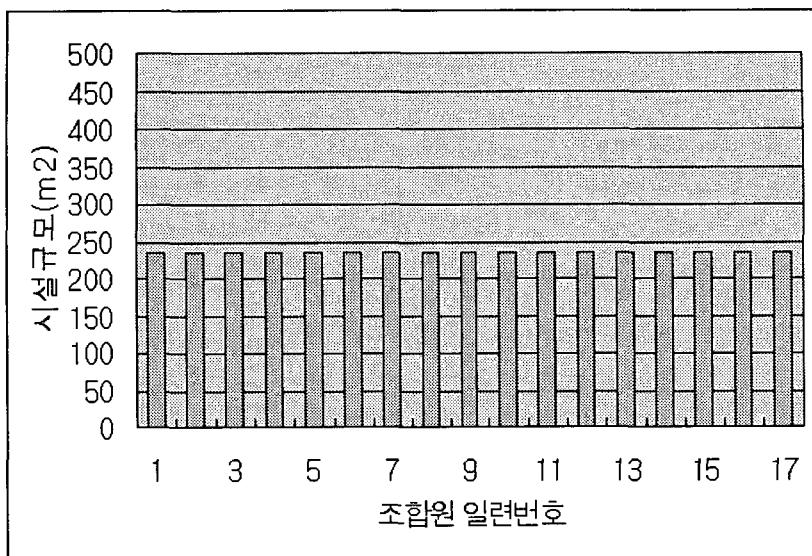
동 어촌계의 가두리양식규모는 앞의 다른 사례지역에 비하면 매우 규모가 큰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이 매우 악화되어 전체 36명중 16명이 현재 가두리 입식을 포기하고 있다.

(3) 남해 B 어촌계(어촌계 면허지)

경남 남해군은 군의 남쪽인 미조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어선어업이 발전되어 왔으며, 양식업은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는 인근 통영지역의 영향을 받아 어류양식업이 성행하기 시작하였다. 남해군의 사례지역인 B어촌계는 전체가구 213호 중 어업가구가 176호로서 어업세력이 대단히 강한 지역이나 어촌계 유형별로는 어선어업이 주가 되고 있다. 따라서 어촌계 종사유형도 어선어업으로 되어 있는데, 입지별로는 연안촌락형으로 되어 있다. 어촌계 소득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서 어촌계 원도 전체 124명중 70% 가까운 80명이 전업계원으로서 어촌계 발전수준별로는 복지형으로 되어 있다.

B어촌계의 관내에는 어업권이 비교적 풍부하여 정치망 1건 9ha, 어류등양식 4건 13ha, 마을어업 2건 31ha가 면허되어 있다. 이중 어류가두리양식은 3건 7ha의 규모

옥영수



〈그림 3〉 경남 남해 B 어촌계 어류양식 행사자당 행사면적 분포

로 면허되고 있는데, B어촌계의 어류양식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성행하여 비교적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식면적도 넓기 때문에 어류양식업에 대한 어촌계원들의 관심은 매우 높다.

B어촌계의 어류양식업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 가지는 수협면허 양식장을 수협과 어촌계가 행사계약을 한 후, 다시 어촌계원과 행사계약을 하는 유형이고, 다른 한 가지는 어촌계면허 양식장을 어촌계원과 직접 행사계약하는 것이다. 이중 수협면허지에 대한 계약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면허지는 2건이 있고, 어촌계 면허지에 대한 직접 행사지는 1건이 있다. 수협면허지는 총 5ha로서 1건은 2ha에 대해 3명이, 다른 1건은 3ha에 대해 10명이 행사를 하고 있으며, 어촌계 면허지에 대한 직접 행사의 경우는 17명이 행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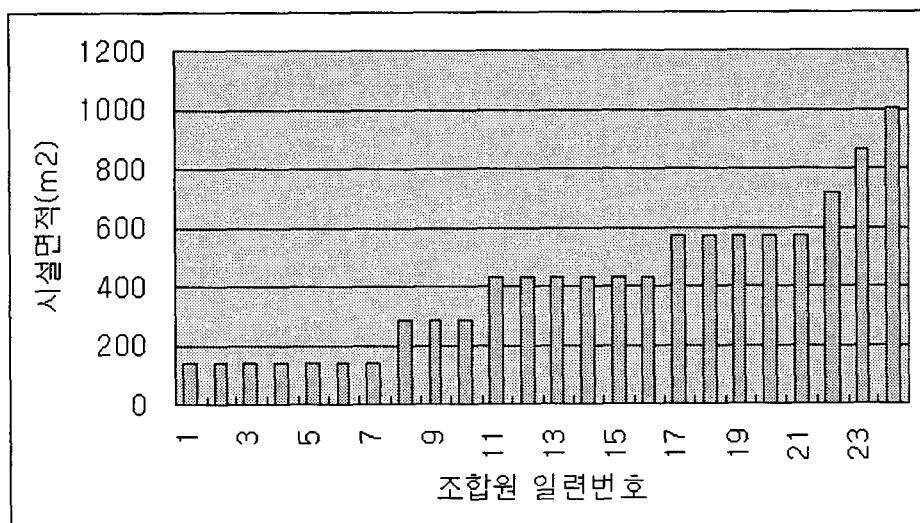
이중 어촌계 면허지에 대한 행사는 17명이 모두 똑같이 236m²의 시설면적을 보이고 있다(그림 3). 이는 비록 절대면적으로서는 매우 좁은 규모라 할 수 있지만 어촌계에 있어서 총유어장에 대한 어장행사라는 점에서는 공동체적 생산양식의 의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의의 변질형 사례지역

(1) 통영 J 어촌계

경남 통영지역은 우리나라 어류양식업이 처음 태동된 곳일 뿐만 아니라 현재도 어류양식업이 가장 성한 곳 중의 하나이다. 경남 통영의 사례지역인 J 어촌계는 전체 가구수 138호 중 65가구가 어업에 종사하는 등 어업의존도가 높은 지역에 존립하고 있

어촌계 가두리 양식어장의 행사실태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고찰



〈그림 4〉 경남 통영 J 어촌계 어류양식 행사자당 행사면적 분포

는 어촌계이다. 어촌계 종사 유형별로는 양식업형이며, 통영시를 주소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별 분류로는 도시근교형에 속하고 있다. 또한 어촌계원은 55명으로서 이 중 전업은 50명인데 비해 겸업은 5명으로서 거의 어업이 주된 어촌계라고 할 수 있다. 어촌계에 면허된 어업권현황은 정치망 1건 1ha, 어류등 양식 2건 5ha, 그리고 마을어업 2건 37ha가 있어 비교적 어업자원이 풍부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은 통영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어류양식업이 성한 곳으로서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어류양식을 하는 개인들이 있었다고 한다. 더구나 인근지역에는 대규모 기업형으로 어류양식을 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어촌계원들도 일찍부터 어류양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 어류양식의 경험도 쌓아 왔다.

이런 자연지리적 및 사회경제적 영향을 받아 어촌계원들의 어류양식업 성향은 매우 높았다. 그 결과 이미 1980년대 선도적 어업자에 의해 어류양식이 이루어지고 1990년대에는 어촌계 차원의 어류양식업이 매우 성하였다. 이때부터 개인 어류양식업 면허가 없는 어촌계원들 사이에 어장 참여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이와 같은 과다한 경쟁은 결국 한정된 시설지에 과다 종묘를 입식하게 되고 투입된 종묘가 점차 성장하여 감에 따라 부족한 시설지를 감당할 수 없어 불법시설을 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이런 과정은 2000년 이후 어류양식업계의 일반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하여 결국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 결과 수많은 어촌계원들이 연쇄 도산, 연대보증의 후유증을 앓게 되었다. 어촌계 면허 어류양식지에 대한 어촌계원들의 행사내용은 비교적 내만에 위치하여 어장성이 좋은 면허지에 대해서는 조당(6m × 6m) 60만원의 행사료를 받고 있으며, 그 외의 면허지에 대해서는 조당 30만원의 행사료

옥 영 수

〈표 3〉 경남 통영 J 어촌계 행사규모별 행사포기자수, 2004 현재

규모	당초 행사자수(A)	양식 포기자수(B)	B/A*100
1조	7	6	85.7
2조	3	3	100.0
3조	6	4	66.7
4조	5	-	-
5조	1	-	-
6조	1	-	-
7조	1	-	-
합 계	24	13	54.2

를 받고 있다. 행사계약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자가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한다.

J어촌계의 행사자당 행사면적 분포는 〈그림 4〉와 같은데, 시설규모가 7조에 이르는 시설규모를 보이는 어촌계원은 1명이며, 그 다음으로 6조($864m^2$) 1명, 5조($720m^2$) 1명이며, 그 외는 대부분 1·3조를 행사하고 있다. 특히 행사규모가 1조($144m^2$)에 불과한 어촌계원의 수는 7명이나 되어 전체적으로 대단히 영세한 규모를 행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영세한 규모에서는 어가하락 등 상황변화에 대처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게 된다. 실제로 J어촌계의 경우 2002년의 극심한 가격하락과 2003년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인한 양식시설 파괴는 경영압박으로 이어져 많은 어촌계원들이 재도전을 하지 못하고 양식을 포기하는 원인이 되었다. 현재 양식시설을 방치한 상태에 있는 어촌계원이 절반을 넘는 13명이나 되는데 이들 어촌계원은 대부분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를 지고 있어 동 어촌계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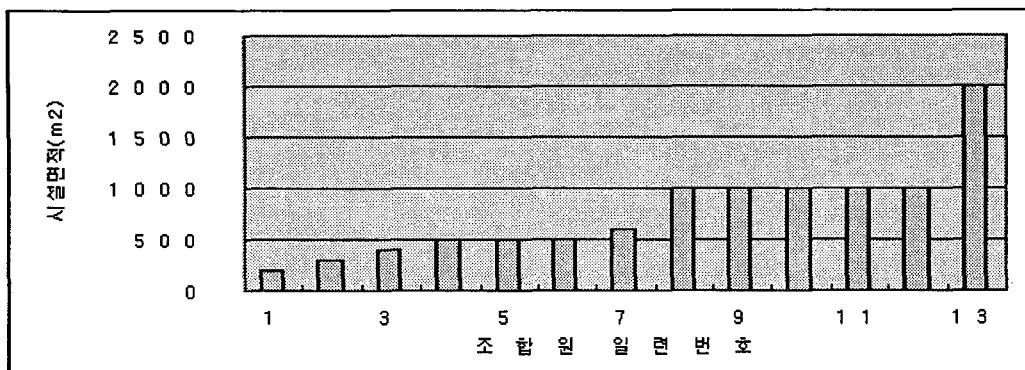
이들 양식시설을 방치하고 있는 계원들의 특징으로는 대부분 규모가 작다는 것이다. 즉 13명의 시설 방치 계원 중 1조 행사계원이 6명, 2조 행사계원이 3명, 3조 행사계원이 4명으로서 소규모 행사계원들의 대부분이 양식을 포기한 상태에 있다(〈표 3〉). 소규모 행사계원들의 경영실패는 계원의 개인입장에서는 심각한 경영상 타격이지만 국가적으로는 유효한 어업자원의 낭비라는 두 가지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J어촌계는 차년도 신규행사계약에 있어 계원들의 신청여부가 큰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준의 행사료가 너무 과하다는 계원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신청이 낮을 경우 행사료 감축이 불가피하며, 이는 어촌계의 행사료 수입이 크게 줄어들어 총유형어장의 어촌계에 대한 경제적 여건조성이라는 당초의 어촌계 의의가 점차 퇴색하게 된다.

(2) 남해 B 어촌계(수협면허지)

앞서 의의유지형에서 남해 B 어촌계를 살펴보았다. 동 어촌계는 어촌계 면허지와

어촌계 가두리 양식어장의 행사실태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고찰



〈그림 5〉 남해군 B어촌계의 수협면허지 행사자당 행사면적 분포

수협면허지가 있는데, 이중 어촌계 면허지에 대해서는 의의유지형으로 어장행사를 하고 있는 반면 2건의 수협면허지에 대해서는 다소 변질된 형태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수협면허지는 총 5ha로서 1건은 2ha에 대해 3명이, 다른 1건은 3ha에 대해 10명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규모에 차이가 있다. 즉 3명이 참여하는 한 면허지에 있어서는 $1,000m^2$ 2명, $2,000m^2$ 1명인데 비해, 10명이 참여하는 다른 면허지에 있어서는 $200\sim1,000m^2$ 로서 서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5).

(3) 여수 G 어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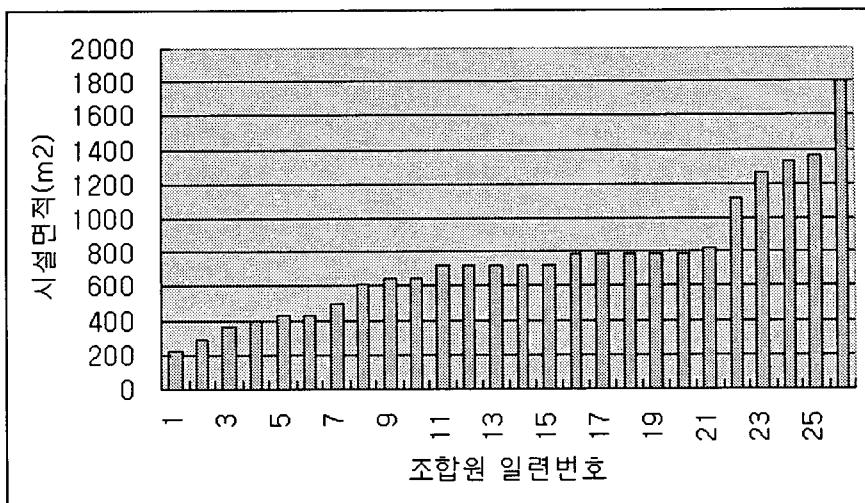
전남 여수는 완도 및 경남 통영지역과 더불어 우리나라 어류양식업이 가장 성한 곳 중의 하나이다. 전남 여수의 사례지역인 G 어촌계는 전체가구수 446호 중 195가구가 어업에 종사하는 등 어업의존도가 높은 지역에 존립하고 있는 어촌계이다. 어촌계 종사유형별로는 복합형이며, 여수시를 주소지로 하고 있으나 육지거리로는 진입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가구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어촌계 입지별 분류로는 연안촌락형에 속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의 어류양식업은 경남지역에 비해서 다소 늦게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 즉 1980년대 후반 일부 어업자들에 의해 어류양식이 시작된 아래, 어촌계에서 어류양식업이 면허된 것은 1990년대 들어서였다. 동 어촌계에는 개인양식면허도 3건이 있으며 여기에서는 단독 혹은 협업경영을 통해 총 5명이 양식에 임하고 있다.

G 어촌계의 어류양식행사규모는 비교적 동질적인 것으로서 3건의 어류등양식면허(이중 1건만이 어촌계 면허이고, 2건은 수협면허)에 대해 총 26명의 어촌계원이 행사계약을 하고 있다.

현재 수협 혹은 어촌계 면허 어류양식지에 대한 어촌계원들의 행사내용은 일률적으로 조당($6m \times 6m$) 30만원의 행사료를 내고 있으며, 행사계약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옥영수



〈그림 6〉 전남 여수 G어촌계 어류양식 행사자당 행사면적 분포

행사계약시 지원자가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한다고 한다. 가장 많은 시설규모를 보이는 행사자는 $1,800\text{m}^2$ 의 시설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작은 시설규모를 보이는 행사자는 216m^2 의 시설규모에 불과하다. 그러나 전체평균 시설규모가 761.5m^2 로서 600m^2 이상 800m^2 이하의 시설규모를 보이는 행사자가 많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규모의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6〉.

(4) 남해 S 어촌계

경남 남해군 S어촌계는 전체가구가 450호에 이를 뿐 아니라 이중 어업가구가 317호에 이르는 매우 큰 어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어촌인구도 전체 1,362명에 이르고 있으나 어업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어 499명이 되고 있다. 어촌계 유형을 보면 종사유형별로는 복합어업형이며 입지유형은 연안촌락형에 속하고 있다. 어촌계 소득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서 어촌계원도 전체 179명중 70% 가까운 116명이 전업계원이며 어촌계 발전수준별로는 복지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동 어촌계의 어업권은 정치망 1건 0.1ha , 어류등양식 1건 1.3ha , 마을어업 2건 16ha 로서 어촌계의 규모에 비해 어업권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느낌이 든다. 이중 가두리양식어장도 1.3ha 의 면허어장 중 총시설면적은 $2,250\text{m}^2$ 로서 4명이 행사하고 있는데, 개인별 시설면적은 $400\sim800\text{m}^2$ 로서 행사규모가 비교적 협소하다고 할 수 있다〈표 4〉. 따라서 동 지역은 비록 4명의 소수가 어장행사를 하고 있지만 행사규모가 다르고, 또한 전체 어장규모가 협소하기 때문에 의의를 상실했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의의가 다소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어촌계 가두리 양식어장의 행사실태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고찰

<표 4> 경남 남해군 S 어촌계 어류양식업 행사자별 시설면적

일련번호	시설면적(m ²)	상대비율
1	400	0.71
2	400	0.71
3	650	1.15
4	800	1.42
평균	563	1.00

3) 의의 상실형 사례지역

(1) 남해 C 어촌계

남해군 C어촌계는 어업이 매우 발달한 어촌계로서 전체가구 109호 중 어업가구가 85호가 된다. 어업인구도 전체 332명중 156명으로서 종사유형별로는 어선어업과 양식업이 고루 발달한 복합어업형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입지유형별로는 연안촌락형이 되고 있다. 어촌계원은 80명으로서 이중 전업이 30명, 겸업이 50명으로서 소득은 그렇게 높지 못하여 어촌계 발전수준별로는 자립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동 어촌계의 어업권은 정치망 2건 2ha, 어류등양식 1건 2ha, 마을어업 1건 120ha로서 마을어업의 면적이 대단히 넓다. 이중 가두리양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류등양식의 경우 다른 어촌계와 달리 2명만이 행사하고 있는데, 각 시설면적은 2,000m²로서 비교적 큰 규모의 어장을 균등하게 행사하고 있으나 특정인과의 행사라는 점에서 어촌계 면허어장의 의의가 완전히 상실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남해 J 어촌계

경남 남해군의 J어촌계는 전체가구가 151호이며 이중 어업가구는 71호로서 중규모의 어촌계이다. 전체 어촌인구는 312명이며 이중 어업인구는 105명으로서 어촌계 종사유형은 어선어업 성격이 강한 어선어업형으로 되어 있다. 입지유형은 연안촌락형이며 어촌계원 평균소득은 그렇게 높지 않아 발전수준별로는 자립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전겸업별 어촌계원을 보면 전체 63명의 계원 중 전업계원은 43명이고, 겸업계원은 20명으로서 전업의 성격도 매우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동 어촌계의 어업권은 정치망 1건 1ha, 어류등양식 1건 2ha, 마을어업 1건 29ha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가두리양식인 어류등양식의 경우 앞서 C사례어촌계와 같이 2명만이 행사하고 있는데, 시설면적은 1,000m²와 3,000m²로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쨌든 이 역시 특정인과의 행사라는 점에서 어촌계 면허어장의 의의는 상실되고 있다.

IV. 어촌계 가두리 양식어장 이용을 둘러싼 제약요인 분석

1. 협소한 어장규모

어촌계의 어장이용은 계원들의 총유에 의한 행사이용이기 때문에 소규모 경영인 경우가 많다. 앞의 사례지역에서도 대부분 $400\sim800m^2$ 혹은 그 미만의 규모에서 행사를 하고 있었다. 통상 양식장 시설면적은 면허면적 1ha($10,000m^2$)에 대하여 20% 정도의 시설면적으로 보고 있다. 즉 면허지에 대한 가두리 시설 규모는 $5m \times 5m$, $5m \times 10m$, $10m \times 10m$, $6m \times 6m$, $6m \times 12m$, $7m \times 7m$, $7m \times 14m$, $14m \times 14m$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10m \times 10m$ 가두리 20조인 $2,000m^2$ 를 1ha로 보고 있으므로⁵⁾ 이렇게 본다면 0.2 0.4ha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실증적인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두리양식업은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해상가두리 양식규모를 0.5ha 이하, 0.5 1ha, 1ha 이상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수익성을 측정한 결과 0.5ha 규모 이하의 수익률이 24.6%, 0.5 1ha 규모의 수익률이 36.4%, 1ha 이상 규모의 수익률이 44.4%로 나타나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⁶⁾. 이러한 현상은 일본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경영규모별 수익성을 비교해보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것이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시설규모는 기업형이 어가형에 비해 평균 2.3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어업이익률도 기업형이 3.1%인데 비해 어가형은 -4.6%로서 어가형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⁷⁾.

국내 가두리 양식어업의 수익률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표 5>와 같다. 이는 1990년대 후반의 정신작·진상대의 연구와 2003년 수협중앙회에 의한 조사결과

<표 5> 가두리 양식업의 수익성 분석 결과 비교

단위 : 천원, %

구 분	정신작·진상대				수협중앙회 (4,149m ²)
	10조 이 하	10~20조	20조 이상	평균	
총수익	359,492	604,983	692,025	515,371	782,250
총비용	271,170	384,633	384,764	357,811	738,843
이익액	88,322	220,351	307,261	157,560	43,407
수익률*	24.6	36.4	44.4	30.6	5.5

*수익률은 매출이익률의 의미 함.

자료 : 정신작·진상대(1997) 및 수협중앙회(2003)에서 작성.

5) 정신작·진상대, “해수어류양식업의 수익성 제고방안”, p.48.

6) 정신작·진상대, 위의 논문, pp. 53~54.

7) 옥영수, 「어촌계 어류양식업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pp. 65~69.

어촌계 가두리 양식어장의 행사실태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고찰

에 의한 것이다. 이중 정신작·진상대의 분석에 의하면 수익률은 규모에 따라 24.6~44.4%를 보인 반면 수협중앙회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5.5%에 불과하다. 이는 최근의 가두리 생산과잉으로 인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정신작·진상대의 분석에서 10조(시설면적 1,000m²) 이하의 경우 수익률은 24.6%, 10~20조(1,000~2,000m²) 경우 36.4%, 20조(2,000m²) 이상의 경우 44.4%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규모의 경제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해 2003년 수협중앙회의 조사결과는 수익률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 있지만 그 시설규모가 평균 4,149m²로서 20조가 넘는 규모임을 감안할 때 그 보다 작은 소규모 경영체의 어업수지는 극히 열악한 상태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표에 의하면 정신작·진상대의 조사분석이 이루어지던 1990년대 중반의 경우에는 10조(1,000m²) 이하의 규모에서도 어업자에게는 가두리를 영위할 만큼 충분한 매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1995~7년의 경우 근해어업의 평균 수익률은 10%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소규모의 가두리에라도 참여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4장에서 본 바와 같이 어촌계 면허 가두리양식장의 규모가 소규모 평준화 현상을 보여주는 원인이 된다.

하지만 가두리 양식 면허가 크게 증가하여 생산과잉사태가 벌어져 가격하락이 지속되었던 시기에 조사된 수협중앙회의 결과에 의하면 손익분기를 보이는 수준은 어촌계 규모보다 훨씬 큰 규모임을 알 수 있다.

2. 어업공동체의 변질 및 붕괴

어촌계는 1962년 수협법을 통해 설정된 제도적인 조직이지만 그 설립모태는 어업공동체를 토대로 하고 있다. 이러한 어업공동체는 연안어장의 이용을 둘러싼 상호경쟁을 배제하여 어장의 효율적 이용을 피하고 구성원간의 공평한 분배를 도모함으로써 연안어장을 공동의 삶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공동체는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실체이므로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 나아가서 공동체를 둘러싸고 있는 제반 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발생, 성장, 해체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성장, 해체의 조건은 역사의 흐름에 따른 전반적인 경제, 사회, 제도 등의 변화에 기인하는 일반적인 조건과 개별 공동체가 처해 있는 특수한 조건으로 대별할 수 있다. 어업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조건은 어업공동체 존립조건의 소멸을 들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노동생산력의 증대에 따른 사회적 분업의 전개이다. 이 사회적 분업의 전개는 산업사회의 성숙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에 비해 어업공동체 해체의 특수적 조건은 개개 어업공동체의 1) 자연지리적 조건과 그에 따른 어업의 양상, 2) 문화중심권으로부터의 거리와 교통편이, 3) 근대적인 문

옥영수

화의 수용도 여부 등인데, 이에 따라 어업공동체는 각기 상이한 분해도를 보이게 된다.

한편 오늘날 어촌계원의 종사유형별 추이는 크게 변하고 있다. 즉 겸업인 계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대신 전업인 계원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 결과 1980년대만 해도 전업계원이 겸업계원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나 2002년에는 70% 가까이 높아졌다. 또 준계원의 비율도 크게 높아져 2002년에는 20,000명을 넘어서 전체 계원의 14%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어촌계원의 어업종사유형이 영세규모의 전근대적인 경영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자영어가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별 어촌계에 있어서도 도로, 교통수단의 발달과 매스커뮤니케이션 및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어촌이 낙후지역, 혹은 문화소외지역으로 인식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고소득시대를 맞이하여 어촌관광개발을 통한 소득증대로 눈을 돌려 연안지역일 수록 관광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연안어촌의 자연경관을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하여 개발붐을 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인간다운 삶(well-being)의 흐름을 타고 어촌이 미래사회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의 변화는 어업공동체가 존립 가능하기 위한 제 조건⁸⁾을 해체시켜 궁극적으로는 어업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오고 있다. 최근 어촌계 이용 어장에 대해 지적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이러한 상황변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어촌계 행사어장에 대한 사유재산권화, 불법시설물의 증가, 어장이용을 둘러싼 혼란 양상 등은 제도화되어 있는 총유어장을 총유어장으로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어업공동체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3. 어장이용질서의 혼란

가두리양식업의 경우 사업이 확산되어 가던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었으므로 신규면허 희망자는 많았으나 정부는 과잉면허로 인한 후유증을 염려하여 억제하는 경향에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어촌계나 수협면허 어장에 행사자로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행사자로 결정된 이후 보다 많은 시설을 하기 위해

8) 어업공동체의 존립조건은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이 중 경제적으로는 1) 어장이 어민의 지역집단인 어촌의 총유로 있어야 하며, 2) 어민의 대부분이 독자적 재생산을 영위할 만큼 성장하지 못하여 총유어장에서 행하는 공동어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3) 제2차 생활물자인 산림 등이 공유재산으로 있어야 한다.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어민은 초자연적 힘에 의지하는 마음이 강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포기하기 쉬우며, 전통적 경험을 존중한다. 또 어민은 봉쇄적이고 동질적인 사회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이어야 한다. 또한 어촌의 지리적 고립성으로 인한 문화의 저위성과 전통고수적인 행동양식도 어업공동체의 존립에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주우일·옥영수, 앞의 책, pp. 18~19.

어촌계 가두리 양식어장의 행사실태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 고찰

불법으로 면허지를 확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생산과잉과 수입량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이 지속함에 따라 가두리 양식업자들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행사면적을 초과하는 불법시설 유인은 점차 사라져가는 경향에 있다. 더구나 정부의 단속도 일조를 하게 되어 의해 어촌계나 수협면허의 가두리양식어장에서의 불법면허지 문제는 많이 정비되어가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과밀입식에 따른 문제이다. 이는 단위시설당 적정 입식량 기준이 없기 때문에 행사자 간의 생산경쟁으로 인해 과밀양식의 경향이 나타났다. 과밀양식은 개인의 생산효율성 여부는 차치하고 어병발생을 빈발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어병발생에 대비하여 약제사용의 증가는 경영비 상승과 함께 환경오염과 양식물의 안전성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또한 단위시설당 입식기준이 없으므로 재해발생시 피해량을 둘러싼 잣은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어장이용질서의 혼란은 기본적으로 어촌계에 어업권 면허시 어장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면허지가 효율적인 관리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양식면허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양식경영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면허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를 결여하여 면허 이후에 부실경영에 빠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규정상 어장구역의 범위 또는 정의와 관련하여 양식시설물을 지탱하여 주는 명이나 뜸의 설치구역을 면허구역 내에 포함시킬 것인가 아닌가를 두고 가두리 양식 어업인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전남지역에서는 대체로 면허구역 내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많았으나 경남지역의 경우에는 면허구역 내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어 어장이용을 둘러싼 합리적인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명이나 뜸의 설치구역을 면허구역 내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행 제도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지만 이것을 강행할 경우 면허구역 내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경남지역의 경우 실제 시설을 할 수 있는 면적이 크게 제한됨에 따라 많은 반발이 예상된다.

4. 어촌계 운영상의 문제

어촌계의 실체는 전래하고 있는 어업공동체에 두고 있지만 그 제도적 근거는 수협법에 근거하고 있다. 즉 수협법 제16조의2에 의하면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업무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그 설립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 설립, 합병, 해산, 기관, 사업, 회계 등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어촌계의 설립은 조합원 10인 이상의 발기인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를 거치게 되어 있다. 조합원 10인 이상은

목 영 수

〈표 6〉 어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

사업의 내용
1. 교육 · 지원사업
2. 어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
3. 소속 지구별조합이 소유하는 어업권의 행사
4. 어업인의 생활필수품과 어선 및 어구의 공동구매
5.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수산물의 간이 공동제조 및 가공
7. 어업자금의 알선 및 배정
8. 어업인의 후생복지사업
9. 구매 · 보관 및 판매사업
10. 다른 경제단체 · 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 · 협력
1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구별조합의 위탁사업 및 보조에 의한 사업
12. 다른 법령이 어촌계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4.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종래 20인 이상이던 것을 2000년 이후 완화한 것으로서 이에 의해 어촌계수는 더 늘어나게 되었다.

어촌계 설립준비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한 후 정관,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기타 사항 등을 총회에 부의하여 의결되면 시장 · 군수에게 설립인가신청을 하고 이후 어촌계의 운영은 시장 · 군수의 감독을 받게 된다. 여기서 종래 어촌계는 수협의 하부조직으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시장 · 군수의 인가와 사후 감독을 받는다는 문제의 요소가 있다. 염연히 수협법에 의해 설립되며, 그 설립목적을 어촌계원의 생산력의 증진과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 및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동법시행령 제1조) 설립 및 감독권이 시장 · 군수에게 주어진 것은 어업 면허권이 시장 · 군수에게 있으므로 어장관리적 측면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어촌계가 설립되면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계장, 간사, 감사를 필수기관으로 구성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나 직원을 둘 수도 있다. 또 어촌계는 반드시 총회라는 의결기관을 두고 있으며, 계원의 대표로서 총대를 두기도 한다. 이런 조직상의 구조는 어촌계가 비록 비법인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법정 요건 하에 운영되는 상당히 공식화된 조직임을 의미한다.

또 어촌계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표 6〉과 같은 14가지를 들고 있으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 · 운용하거나 수협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동법 시행령 제17조). 이는 어촌계가 비록 법인격은 없다 하더라도 거의 법인격 있는 단체와 유사한 공식조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어촌계 가두리 양식어장의 행사실태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 고찰

문제는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어촌계에서 과연 이러한 법적 요건 혹은 내용을 충족할 수 있는 어촌계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조합원 10명 이상을 설립요건으로 하고 있는 소규모의 어촌계에서 이와 같은 조직상, 혹은 사업상 내용을 충족할 수 있는 어촌계는 별로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어업공동체의 성격 자체가 변질, 분해되어 가고, 어촌계 구성원의 노령화와 인구과소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날 존재하는 어촌계의 법적 구성과 실체와의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존재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V. 정책 시사점 및 결론

1. 정책 시사점

1) 경영규모 확대 필요성

앞에서 가두리양식업도 다른 산업과 같이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있어서도 어촌계 행사 가두리양식장이 어촌계 면허 혹은 행사는 의미에서 의의유지형, 의의변질형, 의의상실형으로 구분하여 본 결과 대체로 의의상실형에서는 상대적 행사면적이 다른 두 유형보다 넓어서 경영상태가 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어촌계의 본질적 의의를 유지하는 의의유지형이나 의의변질형은 대체로 행사규모가 협소하여 경영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있었다(표 7). 즉 의의유지형의 경우 완도 S 어촌계를 제외한 여수 H 어촌계와 남해 B 어촌계의 대체적 시설규모는 236~500m²로서 매우 협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의변질형의 경우도 시설규모가 행사자들 사이에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넓은 면적의 행사자라 하더라도 절대면적이 1,000m² 이하로서 영세한 규모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앞서 가두리 양식업의 수익성 분석에서 10조(1,000m²) 이하를 소규모로 분류하였고, 수협중앙회의

〈표 7〉 사례 어촌계의 시설규모와 경영 상황

구 분	어촌계	대체적 시설규모	특 징
의의유지형	여수 H 어촌계	400~500 m ²	도 서 지 역
	완도 S 어촌계	1,300 m ²	경 영 악 화
	남해 B 어촌계	236 m ²	어촌계 면허지
의의변질형	통영 J 어촌계	144~576 m ²	소규모행사자 포기사례
	남해 B 어촌계	250~1,000 m ²	수 협 면 허 지
	여수 G 어촌계	216~828 m ²	도 서 지 역
	남해 S 어촌계	400~800 m ²	소수인 행사(4명)
의의상실형	남해 C 어촌계	2,000 m ²	지 속 적 경 영
	남해 J 어촌계	1,000~3,000 m ²	지 속 적 경 영

옥 영 수

조사대상이 4,149m²였던 것〈표 5〉에 비추어 본다면 지극히 협소한 면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 이들 지역의 가두리 양식업 행사자의 경영상태는 크게 악화된 상태에 있다. 특히 통영 J 어촌계의 경우 극심한 경영악화로 인해 소규모 행사자들의 양식포기사례가 극심하다는 것을 앞의 〈표 3〉에서 본 바가 있다.

한편 의의상실형에 해당하는 남해 C 어촌계와 J 어촌계의 경우 시설규모가 1,000~3,000m²로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속적인 경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촌계 이용 가두리양식업의 적정경영규모를 파악하여 정책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일반산업의 경우에 적정경영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개별 경영체 내부의 문제라 할 수 있으나 어촌계면허 가두리양식업의 경우에는 면허와 이용자가 공동체적 이용방법에 의하기 때문에 그 본질적 의의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경영규모 확대를 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이런 점에서 향후 어촌계 가두리양식 어업의 경영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어촌계와 총유에 의한 어장면허의 제도적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어장이용제도의 개선

(1) 어촌계 이용 어업권의 면허화

지난 30여년간 양식업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여 왔다. 그러한 발전의 성장동력은 면허에 기초한 어업권제도의 확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면허어업제도는 곳곳에서 허점을 보이고 있다. 세계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경제규모가 과거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커진 현재의 상태에서 기존의 면허어업제도는 여러 곳에서 비효율성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양식발전 초기단계에서 유용하였던 면허어업제도를 과감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양식업에 존재하고 있는 각종 진입장벽을 대폭 제거하여 노력과 창의에 의한 생산성 향상의 동기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또 면허자체가 불로소득의 방편이 되는 것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면허 일제갱신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또 면허 유효기간도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장의 소유와 이용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원래 어업권은 면허에 의해 재산권화되지만 소유의 개념보다 이용의 개념을 중시하기 위해 완전한 재산권으로서 몇 가지 제약을 두었다. 특히 어촌계에 면허되는 어업권은 그것이 마을어업(종래의 공동어업)이든 양식 혹은 정치어업이든 원래는 이용권만 부여되었으나 1970년대 ‘總有’ 개념의 도입으로 어촌계가 면허의 주체가 되어 이용권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러던 것이 30여년을 지나면서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어촌계는 면허만 받은 채 그 이용권은 일부 어촌계원만 향유하는 사례가 빈발함으로써 어촌계는 행사료라는 불로 소득만 획득하는 기형화된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그 결과 어장은 이용권을 넘겨받은 일부 어촌계원, 혹은 비계원(준계원으로서 행사)이 마음대로 어장을 이용함으로써 불법 시설 확충, 과밀 입식과 과잉사료투여로 인한 어장환경 악화 등의 많은 부정적 요인을 야기하게 되었다. 4장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어촌계에 있어서는 많은 계원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몇몇 행사자에 어장이용권이 집약된다. 다수의 어촌계원들이 참여할 경우에는 행사규모가 협소하여 경영효율화를 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일부 행사자들에 집약될 경우에는 어장환경을 크게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어장의 소유와 이용권을 분리함으로써 어장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어업권의 면허주체는 기존 어촌계의 상위조직인 수협에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촌계를 광역화한 후 광역화한 어촌계에 부여하고, 이용권은 전체 계원에 대하여 경쟁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면허주체를 수협에 부여하자는 것은 어장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학계에서 주장되어 왔기 때문에 그 일환을 상정한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수협이 어촌계의 상위조직으로서 큰 의미를 갖지 못한 채 지도사업에 별다른 역량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후자의 방법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 된다⁹⁾.

(2) 어촌조직의 개편

어업권의 소유와 이용권을 효율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촌조직을 대폭 개편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어촌의 기본적 조직요소로 되어 있는 어촌계를 보다 광역화하여 어장관리 중심의 협동조합으로 개편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지구별 수협이 어장관리, 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 등의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어장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현재의 지구별수협은 그 조직을 그대로 금융업무 중심으

9)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보고서에서는 어업권의 이용과 소유권을 분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의하면 과거 충산위주 정책기조 하에서 어업권을 소유권에 기초한 수면의 베타적 권리로 간주하여 운영해 온으로써 첫째, 전래의 지선어장 이용관리 주체이고 부락성격을 가지고 있는 어촌계에 어업권 취득 및 관리기능까지 부여함으로써 지구별조합이 어업관리 및 생산조직기능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었고, 둘째, 어촌계의 면허취득 우선권 수역과 개인 어업자 우선권 수역을 구분 설정했으나 실제로는 전체어장이 어촌계로 집중되는 두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유는 어촌계가 가지고 있으나 실제 어업은 어촌계 명의의 어업권을 개인 어업자가 행사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향후 어업권을 어장이용권으로 재편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동 결론은 해조류 양식업에 국한하는 것으로서 가두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생산구조개편을 통한 경쟁력 있는 수산업 실현」, pp. 99~105). 이는 어업권에 대한 소유와 이용권이라는 이론적 측면에서는 본 연구와 인식을 같이하지만 어촌계면허 가두리양식업의 실태에 대해서는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다 할 것이다.

옥영수

로 잔존시켜 상호 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장차 광역화할 어촌계는 어촌계원 500~1,000명 수준으로서 기존의 법인어촌계 규모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성격과 기능도 법인어촌계와 동일한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다만 과거의 법인어촌계와의 차이는 신용업무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협이 전담하고 본 연구에서의 광역어촌계는 생산 업무를 전담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수협의 신용업무는 최근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협과의 통합문제까지 고려할 때 어촌지역의 협동조합운동에 큰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어찌되었던 간에 이러한 광역화를 통해 어촌계는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본 어류양식업의 발전과정에서의 어협과 같이 어촌계를 통해 공동 출하를 꾀한다던지,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브랜드화를 꾀한다든지 함으로써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업화, 개방화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생산측면에 있어서도 사료의 공동구매를 통해 구입가격을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료회사나 각종 생산자재회사들에 대해 강한 교섭력을 견지함으로써 경영비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어촌계 운영개선

(1) 법인화

오늘날 어촌계가 법적인 구성요건에도 불구하고 실제 모습은 이론의 형해화한 형태로 잔존하고 있음을 앞 장에서 보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장소유와 이용을 분리하기 위하여 어촌계를 광역화하여 어장이용의 합리화를 꾀하자고 앞 절에서 지적하였다. 이에 나아가 어촌계를 법인화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현재 어촌계에 요구되는 조직구성 및 사업내용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¹⁰⁾.

즉 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점점 소형화, 노령화, 형식화되어 가는 어촌계를 규모화 시킴과 동시에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어장의 총유이용이란 가장 원시적인 경제행위를 명확한 근대적 소유개념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장의 이용과 관리를 합리적으로 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각각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인 사업을 유지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계원의 소득증대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비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영이나 조합으로부터의 차입금 조달 등을 어

10) 수협법시행령에는 어촌계 설립을 위하여 명확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설립후 계장, 간사, 감사, 이사 등을 둘과 동시에 총회개최 등 일반법인에게 요구되는 것과 비슷한 법절차를 가지게 하고 있다. 또한 시장·군수는 감독권을 가지게 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14가지를 법정화하고 있는 등 엄격한 요구를 하고 있음을 4장에서 살펴보았다.

어촌계 가두리 양식어장의 행사실태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고찰

총계 간부 개인 명의로 하게 함으로써 종종 개인비리 발생을 야기하는 등 과행적인 운영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는데, 법인으로 함으로써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즉 보다 강력한 조직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어촌계장 개인의존도를 줄임과 동시에 보다 투명한 경영상태를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어촌계 임원들의 임기 단축

오늘날 어촌계의 역할은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설립목적이나 요건에도 불구하고 어촌계는 그 존립 자체에 의해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가 많다. 즉 합리적인 어장관리나 계원들의 공동사업은 경시되는 반면 행사료 수입이나 마을어장의 빕매(濱賣)에 의한 소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소득은 어촌계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대부분을 소비해 버리고 어촌계원에게 직접적인 소득원으로써 분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런 점에서 어촌계의 어장관리와 어촌계의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어촌계 활동에 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계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으로서는 광역화 및 범인화를 통해 어촌계에의 관심을 높이고, 현재 4년으로 되어 있는 어촌계장과 간사의 임기를 단축하도록 하여야 한다(수협법 시행규칙 제13조). 또 3년으로 되어 있는 감사의 임기 역시 줄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상태에서 임기를 4년이나 3년으로 못 박아 놓은 것은 어촌계원의 노령화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4년, 혹은 3년은 너무 장기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촌계 임원들의 임기를 단축시켜 자주 교체시키거나 연임시킴으로써 어촌계원들은 보다 어촌계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2. 결론

어촌계가 처음 설립된 1960년대와 현재의 국민경제 여건은 크게 달라졌다. 국민경제 1만 불 시대에서 2만 불 시대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경제 패러다임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다. 이 결과 어촌계 이용 어장에 있어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용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가두리양식업과 같이 개별적인 경영활동에 크게 의존하는 생산양식의 경우 충유어장이라는 개념은 어장의 이용 방법상에 많은 불합리한 요소를 지니게 된다. 즉 연안어촌에서 영위할 만한 소득원이 별로 없는 경우 어촌계 면허 가두리양식장에는 양식을 희망하는 계원들이 집중하게 된다. 이는 결국 소규모 경영규모를 피할 수 없게 되어 경영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효율성의 저하는 수익성 저하를 유발하여 결국은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국제경쟁력의 저하는 수입자유화의 시대에 수입을 촉진하게 되므로 국내 생산 어업자의 수익

옥영수

성을 더욱 열악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또 어촌계 생성의 원형질이라 할 수 있는 어촌공동체가 변질 및 붕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오늘날 어촌계는 연안어촌지역의 소득증대와 민주적 운영이란 두 면에서 모두 혁신화한 역사적 잔재로만 존재한다 할 정도로 그 실존적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이는 결국 어촌계와 어촌계 면허 어장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어촌계 운영이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어촌지역에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구성요건 조차 갖추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하여 어촌계의 물적 토대가 되는 어촌계 면허어장은 심각한 상태로 이용질서가 침체되고 있다. 어장관리는 물론이거니와 공동의 이용을 전제로 한 행사방법도 대부분 개인화되는 경향에 있다. 어촌계는 단순히 행사료라는 불로소득만 획득하는 무의미한 조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와 더불어 어장이용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어업권의 소유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즉 기존 어촌계 이용 어업권의 면허주체는 어촌계의 상위조직인 수협에 부여하자는 논의도 없지 않지만 오늘날 수협이 어촌계에 대한 지도기능이 거의 상실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촌계를 광역화한 후 광역화한 어촌계에 집중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다음 그 이용권은 전체 계원에 대하여 경쟁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와 아울러 전반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촌계의 운영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 한 예가 법인화를 들 수 있다. 이는 어촌계 면허어장이용의 난맥상이 어촌계 면허 어장이 총유에 의한다는 전근대적인 이용형태에 있기 때문에 법인화하여 면허의 주체로 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촌계를 통폐합하여 광역화한 어촌계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광역화한 어촌계는 종래의 법인어촌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차이점으로는 신용업무는 기존의 수협에 남겨 두기 때문에 생산업무에 전담하는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현행 4년 혹은 3년으로 되어 있는 각 임원들의 임기도 단축할 필요가 있다. 어촌계 임원들의 임기를 단축시킴으로써 어촌계원들의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다.

参考文献

- 박정석, “어촌마을의 공유재산과 어촌계”, 농촌사회 제11집 제2호, 농촌사회학회, 2001. pp. 21~36.
정신작·진상대, “해수어류양식업의 수익성 제고방안”, 수산경영론집 제28권 제2호, 한국수산경영학회, 1997.12. pp. 48~54.

어촌계 가두리 양식어장의 행사실태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 고찰

- 옥영수, 어촌계 어류양식업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pp. 65~69.
- 주우일·옥영수, 공동어장의 합리적 이용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 12. pp. 18~19.
- 최정윤,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업권 관리기능에 대한 비교 연구 : 어촌계의 어장관리활동을 중심으로”, 수산경영론집 제29권 제2호, 한국수산경영학회, 1998. 12. pp. 6~15.
- 최정윤 등, 자율적 어업관리를 위한 어업생산자조직의 어업권관리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부설 수산기업연구소, 1997. 12. pp. 12~35.
- 해양수산부, 기르는 어업의 잠재력 조사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3. pp. 254~255.
- 小野征一郎・堀口健治, 日本漁業の經濟分析 -縮小と再編の論理-, 農林統計協會, 1992. pp. 188~204.
- 西日本漁業經濟學會, 轉機に立つ日本水産業, 九州大學出版部, 1988. pp. 126~136.
- 濱田英嗣, ぶり類養殖の産業組織 : 日本型養殖の展望, 成山堂書店, 2003. pp. 38~200.

옥영수

The Research on the Fish Aquiculture Structure of Fishing Community

Ock, Young – Soo

Abstract

Since late 1990's, the Fish Aquiculture Households belong Fishing Community have been faced very serious pressure of management. The surface factors of this situation have been understood to overproduction and too much imports from China, but basic factor was caused structural problem, that is considered small scale production system.

Then, We should enlarge scale of the Fish Aquiculture Households belong Fishing Community to overcoming profitability aggravation.

To the Enlargement of Scale, We should consider to change the regime of Fishing Community that means two practical programs. First, it need to enlarge the scale of Fishing Community than now, and Second, it need to incorporate the Fishing Community for exclusive Management of Fish Aquiculture Rights.

Key words : Fish Aquiculture, Fishing Community, Enlargement of Scale, Exclusive Management